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06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오세희·김동아·임호선

강준현 • 박희승 • 전진숙

허성무 · 강득구 · 장철민

조정식 · 조인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
	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